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14
------	------

2025. 12. 1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소영철 의원 등 23명
2.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1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소영철 의원)

1. 제안이유

-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소비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 등 근무시간이 유연하고 보상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면서 구인난 극복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 무인화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영세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이 협소하고 자금 및 디지털 역량의 부족 등으로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구직 방법도 온라인 채용 방식보다는 주변의 소개, 사설 직업소개소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구인과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실시함(제8조제9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뒷받침하고자 발의됨.

2. 소상공인 구인활동 지원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소상공인의 채용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인 지원의 필요에 따라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최근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과 단기·유연 근로가 증가하고 구직자의 일자리 선택이 비정형 노동으로 분산됨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2025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5. 6.)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동안 사업주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에서 1.1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5천명이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인력수급 공백이 확인됨.
- 특히 민간의 구인·구직 서비스는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고령 소상공인의 경우 디지털 활용에 취약하여 민간 플랫폼만으로는 적합한 인력풀(pool)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 또한 서울시에서도 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구인은 긴급성, 근거리 거주 선호, 비공식 채용 관행 등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여 현재와 같은 광역형·표준형 구인·구직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구인·구직 정보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구인활동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영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31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 의 자: 소영철, 강석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신복자,
심미경,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이성배,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장태용,
홍국표, 황유정 의원(23명)

1. 제안이유

-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소비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배달 라이더 등 근무시간이 유연하고 보상이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면서 구인난 극복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 무인화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
- 하지만, 영세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장이 협소하고 자금 및 디지털 역량의 부족 등으로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구직 방법도 온라인 채용 방식보다는 주변의 소개, 사설 직업소개소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구인과 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실시함(제8조 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8조제9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9.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u>9.</u>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8. (생략) <u>9.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u> <u>10.</u>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제9호	△	소상공인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사업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및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문의결과)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구체적·객관적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제9호의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사업 비용 등은 서울시 관련부서(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및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추계를 위한 자료조사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구인과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연계해주는 사업의 추진방식에 따라 소요비용 차이가 클 것 보여 구인지원과 관련된 통상적 사례를 통한 합리적 추계 또한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1) [사업추진 주요목적 고려] 서울시에 기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은 주로 구직에 초점이 맞춰져 이는 소상공인 구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향후 해당규정을 근거로 한 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시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